KOSHA GUIDE

C - 98 - 2014

- (13) 헬기 운반에 앞서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행경로 및 타공작물의 횡단개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14) 헬기 운반 및 조립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다음의 기상조건 시에는 운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
 - ② 시계거리 1,000미터 이내인 경우
 - ③ 강우량: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
 - ④ 강설량: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
- (나)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되, 비행여부는 기장이 결정 하여야 한다.
 - ① 강풍이 불거나 풍설인 경우
 - ② 난기류의 발생이 심한 경우
 - ③ 기상의 급변이 예측되는 경우
 - ④ 엔진 등 기체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경우
 - ⑤ 화물의 모양이나 매달기 공구 등이 불량한 경우
 - ⑥ 운반중량을 초과한 경우
 - ⑦ 기타 기장이 비행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다) 헬기장, 하강장 및 그 주변에 헬기의 풍압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거하거나 단단히 묶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헬기장, 하강장 및 그 주변에서는 일절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마) 헬기의 진입 및 진출방향 바로 아래서 작업을 하거나 기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지상 근로자는 경사지에서 헬기의 주회전 날개, 뒷부분 회전날개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사) 화물의 운반을 위한 연락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헬기장과 헬기간 : 항공무전기 또는 휴대용 무전기
 - ② 헬기장과 하강장간: 휴대용 무전기 또는 유선전화기
 - ③ 하강장과 헬기간 : 수신호 또는 흑판, 휴대용 무전기
- (아) 하강장과 헬기간의 수신호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.
 - ① 신호자는 하강장에 진입하는 헬기의 기장 또는 헬기상 유도자가 확실하 게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.